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114 발의연월일: 2024. 9. 20.

발 의 자: 곽규택・이성권・조배숙

유상범 • 장동혁 • 주진우

송석준 • 박준태 • 정성국

김대식 · 서지영 의원

(11인)

제안이유

최근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뒤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알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추가로 술을 더 마시 는 방법으로 범행을 회피하려는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음주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운전 당시 알코올 또는 약물의 영향 유무나 정도가 발각되는 것을 면할 목적으로 다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투여하는 것을 금지 하고 그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입법적 보완을 하고 자 함.

주요내용

- 가. 운전 당시 알코올 또는 약물의 영향 유무나 정도가 발각되는 것을 면할 목적으로 다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투여하는 것을 금지함 (안 제45조의2 신설).
- 나.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자전거등을 운전한 경우 한정) 에 처하도록 함(안 제148조의2제5항 및 제156조제15호 신설).
- 다. 이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위반한 경우(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경우로 한정)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48조의2 제1항제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곽규택의원이 대표발의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일부 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11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9745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제44조제1항 중 "제45조"를 "제45조, 제45조의2"로 한다.

제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2(음주측정 등 방해 금지)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은 운전 당시 알코올 또는 약물의 영향 유무나 정도가 발각되는 것을 면할 목적으로 다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투여하여 서는 아니된다.

제54조제6항 중 "대통령령"을 "술에 취하거나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의 운전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14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을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45조의2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 중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을 "제44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45조의2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제44조제2항을"을 "제44조제2항을"라 제4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45조의2를 위반하여 운전 당시의 알코올 또는 약물의 영향 유

무 또는 정도가 발각되는 것을 면할 목적으로 다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투여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6조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제45조의2를 위반하여 운전 당시의 알코올 또는 약물의 영향 유무 또는 정도가 발각되는 것을 면할 목적으로 다시 술을 마시거나약물을 투여한 사람(자전거등을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19745호 도로교통법	법률 제19745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법률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
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	전 금지) ①
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	
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	
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	
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u>제45조</u> , 제47조, 제50조의3, 제	제45조, 제45조의2
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	
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는 아니 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u><신 설></u>	제45조의2(음주측정 등 방해 금
	지)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u>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은 운전</u>
	당시 알코올 또는 약물의 영향
	유무나 정도가 발각되는 것을
	면할 목적으로 다시 술을 마시
	거나 약물을 투여하여서는 아
	<u>니 된다.</u>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 ~ ⑤ (생 략)
- ⑥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 은 제외한다)은 교통사고가 발 생한 경우에는 <u>대통령령</u>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사 를 하여야 한다.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 정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⑤ (현행과 같음)
⑥
<u>술에 취하거나</u>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의 운
전 여부 등 대통령령
전 역사 8 세 8 8 8
·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
항, 제2항 또는 제45조의2를 -
<u> </u>
제44

조제1항, 제2항 또는 제45조의
2를
·
1. 제44조제2항 또는 제45조의
2를
<u>.</u>

2.·3. (생 략) ② ~ ④ (생 략)

<신 설>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 ~ 13. (생략)

<신 설>

- 2. · 3. (현행과 같음)
- ② ~ ④ (현행과 같음)
- ⑤ 제45조의2를 위반하여 운전 당시의 알코올 또는 약물의 영 향 유무 또는 정도가 발각되는 것을 면할 목적으로 다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투여한 사람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 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 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제	15	b3	=(旦.	즥,)	 	 _	 	_	 	
							 	 	 _	_	 	

-----.

- 1. ~ 13. (현행과 같음)
- 14.제45조의2를 위반하여 운전 당시의 알코올 또는 약물의 영향 유무 또는 정도가발각되는 것을 면할 목적으로 다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투여한 사람(자전거등을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